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 20200971   | 2020.08.04.  | 2025.02.18   |



## 정 보 공 개 서

꿈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꿈다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가맹<br>본부<br>정보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54번길 53, 2층 |     |                     |
|                | 전화번호      | 031-928-6424                | 이메일 | ggoomda19@naver.com |
|                | 담당부서(연락처) | 031-928-6424                |     |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1)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사용 브랜드   | 주 소                         |         |              |               |
|----|----------|-----------------------------|---------|--------------|---------------|
| 꿈다 | 찜피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54번길 53, 2층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개인사업자    | 2019.09.02.                 | 최정희     | 031-928-6424 | 070-4009-0465 |
|    |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 330-20-00966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 주식회사 모아프레시 | 찜피   | 2023.04.07.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7, 719호 | 이정권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합병함        | 해당없음       |      |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해당없음       |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으로 가맹사업을 인도함 | 해당없음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1)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짬피                                                                                                             | <짬피>는 짬닭과 프리미엄 피자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맛을 선보이자는 의미입니다. 식자재 하나하나에 원칙과 정성을 담아 최고의 품질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상 호          | 짬피 0 0 점                                                                                                       |                                                                                            |
| 상표<br>(서비스표) |  <b>zzimpi</b><br>짬닭과 피자를 한번에 | 제43류 : 제40-1572610호                                                                        |
| 광 고          | -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 | -    | -    | -    | 150,845 | -    | -     |
| 2022 | -    | -    | -    | 42,669  | -    | -     |
| 2023 | -    | -    | -    | 107,458 | -    | -     |

당사는 재무재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첨1]과 같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매출에 대한 자료를 대신합니다. [별첨1]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는 2023년 4월 7일 가맹사업 영업권을 인수하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영업표지 | 연도    |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    |
|------|-------|-------------|----|----|
|      |       | 매출액         | 상한 | 하한 |
| 짬피   | 2021년 | -           | -  | -  |
|      | 2022년 | -           | -  | -  |
|      | 2023년 | -           | -  | -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1)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br>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관련 임원        | 최정희 | 대표   | 2019.09.02 ~ 현재 | 대표 | 회사업무 총괄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 점            | 임원수 (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도 12월 31일 | 1       | 0   | 0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영업표지 | 등록번호 | 사업내용 |
|----|-------|----|----|------|------|------|
|    |       |    |    |      |      |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1)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br>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br>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등록만료일       |
|----------------------------------------------------------------------------------------------|----------|--------------------------------------|---------------------------------------------|----------------|-------------|
| <br>(상표권) | 43류      | 출원 : 2019.04.10.<br>등록 : 2020.02.07. | 출원 : 제 40-2019-0055169<br>등록 : 제40-1572610호 | 윤효남            | 2030.02.07. |

※ 당사는 2023년 4월 7일 자로 [짬피]의 영업권을 '주식회사 모아프레시'로부터 인수하면서 [짬피]의 지식재산권을 소유자 윤효남으로부터 2023년 3월 3일 ~ 2026년 3월 2일까지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합의하였습니다. 당사는 위 상표권에 대한 권리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당사로 이전완료되기 전까지 상표권의 현재 소유자인 '윤효남'으로 명기합니다. 상표권의 소유자가 당사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상표권의 사용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짬피]를 시작한 날 : 가맹사업 개시 예정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현재 직영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짬피]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이수푸드빌      | 짬 피  | 윤효남     | 가맹사업 경영사실 없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29, 2층        |
| 주식회사 모아프레쉬 | 짬 피  | 이정권     | 가맹사업 경영사실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7, 719호 |
| 꿈다         | 짬 피  | 최정희     | 가맹사업 예정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54번길 53, 2층  |

\* [이수푸드빌]은 2020.06.01.~2021.03.31. 까지 가맹본부입니다.

\* [주식회사 모아프레쉬]는 2021.03.31.~2023.04.06. 까지 가맹본부입니다.

### 3. [짬피]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짬 피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한식  | 짬닭, 피자    |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           | -    | -    | -           | -    | -    | 0           | 0    | 0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최근 3년간 [찜피] 가맹점 수

당사의 가맹점 수는 없습니다.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       |       |       |       |    |
| 2022 |    |       |       |       |       |    |
| 2023 |    |       |       |       |       |    |

##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찜피]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    |       |      |               |    |             |             |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점이 없는 이유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지역 | 2023년말<br>가맹점수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br>3.3㎡당 | 상한            | 면적<br>3.3㎡당 | 하한            | 면적<br>3.3㎡당 |    |
| 전체 |                |                         |             |               |             |               |             |    |
| 서울 |                |                         |             |               |             |               |             |    |
| 부산 |                |                         |             |               |             |               |             |    |
| 대구 |                |                         |             |               |             |               |             |    |
| 인천 |                |                         |             |               |             |               |             |    |
| 광주 |                |                         |             |               |             |               |             |    |
| 대전 |                |                         |             |               |             |               |             |    |
| 울산 |                |                         |             |               |             |               |             |    |
| 세종 |                |                         |             |               |             |               |             |    |
| 경기 |                |                         |             |               |             |               |             |    |
| 강원 |                |                         |             |               |             |               |             |    |
| 충북 |                |                         |             |               |             |               |             |    |
| 충남 |                |                         |             |               |             |               |             |    |
| 전북 |                |                         |             |               |             |               |             |    |
| 전남 |                |                         |             |               |             |               |             |    |
| 경북 |                |                         |             |               |             |               |             |    |
| 경남 |                |                         |             |               |             |               |             |    |
| 제주 |                |                         |             |               |             |               |             |    |

## 8. [찜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는 가맹점이 없는 이유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 관리지역 | 상호/명칭       | 주 소      |           |          |
|------|-------------|----------|-----------|----------|
|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관리 가맹점수   |          |
|      |             |          |           |          |
|      |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 가맹점 모집권한 | 가맹계약 체결권한 | 가맹금 수령권한 |
|      |             |          |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찜피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 22 )쪽을 참고하십시오.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비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합계 |    |    |                        |      |     |    |
| 광고 |    |    |                        |      |     |    |
| 판촉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 대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조치 대상 | 의결번호<br>(사건번호) | 위반법령 | 위반내용<br>(위반법조문) | 조치일자 | 조치내용 |
|-------|----------------|------|-----------------|------|------|
|       |                |      |                 |      |      |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 최종<br>법원명 | 판결(선고)일자 | 청구 취지 및<br>내용 | 판결 또는 화해<br>내용 |
|----|----|------|-----------|----------|---------------|----------------|
|    |    |      |           |          |               |                |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피고 | 사건번호 | 선고 법원 | 선고 일자 | 죄명 및<br>범죄사실 | 선고 내용 |
|----|------|-------|-------|--------------|-------|
|    |      |       |       |              |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찜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최초 교육비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55,000 |              |                        |                                                                                             |                                                                                                |
| 가입비   | 3,300  | 계약 체결과<br>동시 | 영업 개시<br>이전까지 계약<br>해지 | ① 영업 개시 이전까지 개<br>업지원, 자료제공 등의<br>서비스가 제공 시 해당<br>대가는 제외하고 반환<br>② 영업 개시 이후 반환되<br>지 않음(소멸) | ※단, 영업표지 사<br>용대가는 계약의 만<br>료시까지 일로 계산<br>하여 경과한 기간의<br>해당분의 금액은 소<br>멸, 잔여기간의 해<br>당분의 금액은 반환 |
| 최초교육비 | 2,200  |              | 교육 시작전에<br>계약해지        | 교육 시작되면<br>반환되지 않음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계약이행보증금 | 2,000 | 계약 체결과<br>동시 | 계속적 가맹금 등 미지급,<br>상품·자재의 대금 / 광고·판촉비 미지급,<br>손해배상액의 미지급,<br>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파손 등<br>본사 또는 본사의 지정 업체에<br>지급해야하는 모든 채무액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7,500              |
| 가입비     | 3,300              |
| 최초 교육비  | 2,200              |
| 계약이행보증금 | 2,000              |

- 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원이 보장되는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금을 별도로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49.5㎡(15평)기준)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br>3.3㎡당<br>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필수설비<br>(기기,기물)      | 가맹본부  | 14,500 | 966               | 내부 인테리어<br>공사 시작 1일 전 | 공사발주 전<br>계약해지 | ※당사의 기준에 부<br>합되도록 시설되어<br>야 함 |
| 간판                   | 가맹본부  | 3,000  | 200               | 내부 인테리어<br>공사 시작 1일 전 | 시공발주 전<br>계약해지 | 전면간판 6M 기준                     |
| 내부 사인물               | 가맹본부  | 1,000  | 66                | 내부 인테리어<br>공사 시작 1일 전 | 시공발주 전<br>계약해지 | 메뉴판,<br>각종 POP 등               |
| 인테리어<br>(점포<br>내장공사) | 추후 지정 | 22,500 | 1,500             | 내부 인테리어<br>공사 시작 1일 전 | 공사발주 전<br>계약해지 |                                |
| 가구                   | 가맹본부  | 2,000  | 133               | 내부 인테리어<br>공사 시작 1일 전 | 시공발주 전<br>계약해지 | 카운터,대기석등                       |
| 최초 공급<br>상품 비용       | 가맹본부  | 3,000  |                   | 물품 공급 1일<br>이전        | 상품발주 전<br>계약해지 |                                |
| 전산시스템                | 가맹본부  | 2,500  |                   | 내부 인테리어<br>공사 시작 1일 전 | 시공발주 전<br>계약해지 |                                |
| 기타 개점에<br>소요되는 비용    | 가맹본부  | 2,000  |                   | 가맹개설<br>전일까지          | 상품발주 전<br>계약해지 | 4계절 유니폼,<br>전단지 등              |
|                      | 합 계   | 50,500 |                   |                       |                |                                |

- ① 별도공사비용 : 오토바이, 키오스크, 전기증설, 철거공사, 전후면 익스테리어 시설공사, 외부환풍 공사(브로아 포함), 익스테리어 데크공사, 폴딩도어(접이식창호) 공사, LPG, LNG시설(순간온수기), 냉난방기 시설 (천정형, 벽걸이형), 매장 내 화장실 공사, 실내외 가구, 어닝, 배전반, CCTV(방범), 소방설비 및 스프링클러 등은 별도비용이며 경우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자체시공.조달하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④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감독비로 3.3㎡ 당 [220]천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①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부에 통지와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의 승인을 구함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①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특별한 기준 없음 | 당사의 사업마인드를 이해하는 사람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① [짬피] 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총액 | 계약금 | 중도금(1) | 중도금(2) | ... | 잔금 |
|----|----|-----|--------|--------|-----|----|
|    |    |     |        |        |     |    |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①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V.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250                             | 매월 5일 까지      |                           |             |                         |
| 광고 분담금                   | 가맹본부          |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총수 대비에 따른 분담금 | 매월 청구일        |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고 집행시      | V.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
| 교육훈련비 (운영, 특별 교육비)       | 가맹본부          | 교육 종류에 따라 상이함                   | 교육 실시 3일 이전   |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교육 시행후      | IX.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가맹본부 또는 추후 지정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미지급액 X 연[15]%                   | 지급기일 익일부터     |                           |             |                         |

②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운영, 특별교육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 없습니다.

| 구분(기준: 2024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재고관리  |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 수시 | 문의: 가맹본부 |
| 회계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 수시 | 문의: 가맹본부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①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       |      |             |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①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받는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에 해당하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해당가맹사업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 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당사의 브랜드 등 영

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한 모든 운영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당사로 반환하여야 하고,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종료 후의 조치                                                                                                                                               | 관련 계약조문 |
|----------------------------------------------------------------------------------------------------------------------------------------------------------|---------|
| 당사의 핵심 Know-how 사용금지                                                                                                                                     | 15조     |
| 상표, 상호 기타 일체의 영업표시의 사용 금지                                                                                                                                | 15조     |
| 간판 등의 일체의 영업표시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함                                                                                                               | 15조     |
| 임대물이 있을 경우 그 반환이 완료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보상이 완료되어야 함                                                                                                           | 15조     |
| 전화 안내 중 당사의 상호 및 기타 유사한 안내문 삭제                                                                                                                           | 15조     |
| 당 가맹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                                                                                                                        | 15조     |
|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 · 부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5조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②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 없습니다.

| 순번 | 품목(단위) | 공급가격 |    | 구분 |
|----|--------|------|----|----|
|    |        | 상한   | 하한 |    |
|    |        |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찜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명칭 | 관계 |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비고 |
|----|----|-----------------------------|------------|----|
|    |    |                             |            |    |
| 계  |    |                             |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추천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체의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상품·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       |       |            |    |    |
| 계     |       |       |            |    |    |

- 2) 당사가 [찜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상품·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       |       |            |    |    |
| 계     |       |       |            |    |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
| 아래<br>< 3) 가맹점사업자의<br>가격 결정의 제한 >의<br>“상품·용역명” 과 동일 | 왼쪽에 기재된<br>이외의 제품을<br>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 시정요구<br>2회 위반 : 2회 이상 시정요구<br>또는 물품공급 중단<br>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br>(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미성년자          | 주류     | 미성년자에게는<br>주류 판매를 금지 | 1회 위반 : 시정요구<br>2회 위반 : 2회 이상 시정요구<br>또는 물품공급 중단<br>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①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피자     | 리얼 크림치즈 피자    | 12,900      | 가격 변경시<br>홈페이지 및<br>인터넷 게시판<br>등을 통해<br>사전 공지함. |    |
|        | 크레이지 어니언 피자   | 12,900      |                                                 |    |
|        | 매드 페페로니 피자    | 12,900      |                                                 |    |
|        | 리얼 불고기 피자     | 16,900      |                                                 |    |
|        | 버터갈릭 쉬림프 피자   | 16,900      |                                                 |    |
| 찜닭     | 까만찜닭 (뼈,순살)   | 24,900      |                                                 |    |
|        | 빨간찜닭 (뼈,순살)   | 24,900      |                                                 |    |
|        | 로제찜닭 (뼈,순살)   | 27,900      |                                                 |    |
|        | 한우 곱도리 (뼈,순살) | 31,900      |                                                 |    |
| 사이드메뉴  | 똥집튀김          | 4,500       |                                                 |    |
|        | 통살치킨까스        | 2,000       |                                                 |    |

-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①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피자와 찜닭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찜 피         | 해당없음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200M | 계약 시 협의에 의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br>(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①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br>→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br>(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① 당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① 당사는 [점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영업표지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①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유통업체명 | 주소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① 당사의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외부 단독매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영업지역 내에 유통집객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등), 공항, 호텔 및 학원시설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권은 별도의 상권으로 간주하여 영업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당사는 2023년 4월 7일 가맹사업 영업권을 인수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당사는 2023년 4월 7일 가맹사업 영업권을 인수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해당 가맹사업의 최초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2 ]년이며, 이후 재계약(갱신)의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1 ]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9조      |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9조      |
|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9조      |
|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9조      |
| 5.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9조      |
|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9조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①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오십만원(₩500,000) X 계약 잔여기간입니다.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1. 당사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정을 거부한 경우 및 경영지도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 제14조 제1항 |
| 2. 가맹비, 교육비, 상품대금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4조 제1항 |
| 3. 필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 제1항 |
| 4. 당사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나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 변경한 경우                                                               | 제14조 제1항 |
| 5. 당사와 합의 없이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 제1항 |
| 6. 당사의 동의 없이 상호협약하거나 약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 제1항 |
| 7. 당사의 동의 없이 정해진 필수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로 가맹점 운영을 대신하는 경우                                                     | 제14조 제1항 |
| 8. 노후화된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의 교체·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제14조 제1항 |
| 9. 제품품질 불량 및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소비자 클레임의 발생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 제1항 |
| 10. “필수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선택품목”의 품질기준을 준수를 위반한 경우                                                | 제14조 제1항 |
| 11. 가공방법, 판매상품의 종류, 판매방식, 적정재고유지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한 경우                                           | 제14조 제1항 |
| 12.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 제14조 제1항 |
| 13.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위해를 가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맹본부”가 개선요구를 했으나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 제1항 |
| 14. 제품의 가공방법, 상품종류, 판매방법, 서비스제공 등에 대하여 당사의 이미지 및 서비스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운영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14조 제1항 |
| 15.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상품이나 메뉴, 서비스 이외의 상품이나 메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제공·판매한 경우            | 제14조 제1항 |
| 16.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 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4조 제1항 |

-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③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제14조 2항 |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제14조 2항 |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4조 2항 |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br>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제14조 2항 |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 2항 |
|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 2항 |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제14조 2항 |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제14조 2항 |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제14조 2항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①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정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양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 | 제 35 조  |

- ② 당사의 협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 수정계약서(안) 검토 → 승낙여부 서면 통지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①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 환매 조건 | 환매 절차 | 비고 |
|-------|-------|----|
|       |       |    |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p>당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만족된 경우, 양도에 대한 승인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및 당사의 공식지정업체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li> <li>2. 영업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li> <li>3. 양도일 전에 영업양수인 또는 매장의 관리자가 점포개시 전에 수료해야하는 교육을 완료한 경우</li> <li>4. 영업양수인이 양도일 현재 당사의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선정조건, 인성, 사업경험, 재정능력에 부합한 경우</li> <li>5. 양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당사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규정을 지키겠다고 서명하는 경우</li> <li>6. 영업양수인이 교육비 등의 금전적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li> </ol> | <p>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p> | <p>양도문의 : 가맹본부</p> |

- ②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①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비고 |
|------|----------------|------------------------------|-------------------------------------------------------------------------------|----|
| 상속   | 가맹본부<br>승인시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br>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br>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
| 대리행사 | 가맹본부<br>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br>지정한 범위<br>내의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br>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br>여부 통지                 |    |
| 업무위탁 | 불가능            |                              |                                                                               |    |

- ②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①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점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일반인에게 피자나 찜닭을<br>판매하는 업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br>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br>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 가맹본부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① 당사는 [점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1:00 ~ 22:00<br>(11시간) | 매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br>야 하고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 문의 : 가맹본부<br>※ Pos 상 개, 폐점 시간을<br>기준으로 함 |

-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가맹본부 또는 귀하가 요청할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①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1명 이상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br>본사의 교육이수 및 사전승인 받은 자 |    |

- ② 가맹본부 또는 귀하가 요청할 경우 종업원 및 근무형태는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①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품질 (quality)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 수시      | 가맹점관리팀 |    |
| 서비스 (service) |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 수시      | 가맹점관리팀 |    |
| 청결 (clean)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가맹점관리팀 |    |
| 회계 감사         |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감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가맹점관리팀 |    |

- ②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①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용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br>전체 행사           | 브랜드 및<br>상품광고             | 광고비의<br>50% | 광고비 50% 중 가맹점<br>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 광고 계획 공고 →<br>가맹점의 광고참여<br>여부 결정 →<br>가맹점부담액<br>제시(명세서)                    | 광고행사 동의<br>절차를 거친<br>후전체 가맹점<br>사업자의 50%<br>이상의 동의시<br>전체 적용  |
|                       | 브랜드 및<br>상품광고+가<br>맹점모집광고 | 광고비의<br>75% | 광고비 25% 중 가맹점<br>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                                                                            |                                                               |
|                       | 가맹점<br>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판촉 행사                 | 통상적인<br>전체 행사             | 행사에 따라 달라짐  |                              | 행사계획 공고 →<br>가맹점부담액 제시 →<br>가맹점의 행사 참여<br>결정 → 행사 시행 →<br>종료 후 최종분담금<br>확정 | 판촉행사 동의<br>절차를 거친 후<br>전체 가맹점<br>사업자의 70%<br>이상의 동의시<br>전체 적용 |
| 할인카드·<br>멤버십<br>제휴서비스 | 해당 없음                     |             |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①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 활동”을 위한 팸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재 등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사의 대표전화와 온라인 주문 URL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계약조문 제16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① 점포개설 후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 일금 오십만원(W500,000) × 계약 잔여기간
- ② 점포개설 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5조 1항의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며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5조 1항의 가맹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위약금의 지급은 가맹비에서 이미 제공한 서비스 대가를 공제하고 이후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1)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50일 내 외    |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즉시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br>-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 | 계약체결 14일 전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br>-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 계약 약 1일전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          |                                                        |
| 보증보험가입         | - 보증보험 가입                                         | 체결 후 약 3일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37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7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30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0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 2)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3)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전항의 규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1)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                                                                                                                                                                                                                                                                                                                                                                                                                                                                                                                                                  |
|--------------|--------------------------------------------------------------------------------------------------------------------------------------------------------------------------------------------------------------------------------------------------------------------------------------------------------------------------------------------------------------------------------------------------------------------------------------------------------------------------------------------------------------------------------------------------|
| 점포환경개선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교체 비용</li> <li>○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
| 지급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br/>(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ul> <p>&lt;분할지급 시 절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br/>(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
| 비용부담 제외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
|      |       |      |      |      |    |

## 3. 경영활동 자문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본부<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br>고객관리,<br>위생관리,<br>교육훈련, 회계 등<br>가맹점 운영 전반에<br>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br>부담                                                  | 문의:<br>가맹<br>관리팀 |
| 가맹점<br>사업자<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br>고객관리,<br>위생관리,<br>교육훈련, 회계 등<br>가맹점 운영 전반에<br>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br>부담<br>(가맹금에<br>포함된 통상의<br>경영지도<br>비용을 초과한<br>부분에 한함) | 문의:<br>가맹<br>관리팀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1) 당사는 [찜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 신용명 또는 내용 | 신용제공자 | 금액 | 신용 형태 | 신용제공 조건 |
|-----------|-------|----|-------|---------|
|           |       |    |       |         |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별도의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       |      |      |      |    |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1)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개업 교육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교육 및 기술교육    | 실습교육<br>집단 강의 |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전<br>까지 이수하여야 함 | 필수교육 |
| 신메뉴 교육 | 신메뉴 개발 교육 등                | 실습교육          |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br>장소 등을 통지   | 필수교육 |
| 운영 교육  | 서비스 기법 등 가맹점 운영<br>능력향상 교육 | 실습교육<br>집단 강의 |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br>장소 등을 통지   | 필수교육 |
| 특별 교육  | 변경된 영업방침 등                 | 실습교육<br>집단 강의 |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br>장소 등을 통지   | 선택교육 |

[※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일정이나 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 비고         |
|--------|--------------|--------------------|------------|
| 개업 교육  | 14일 미만       | 2,200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신메뉴 교육 | 미정 (교육마다 상이) | 교육마다 상이            |            |
| 운영 교육  | 미정 (교육마다 상이) | 교육마다 상이            |            |
| 특별 교육  | 미정 (교육마다 상이) | 교육마다 상이            | 선택교육       |

- 2)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금액을 사전통지 합니다. 그 금액은 통상 교육에 필요한 실비수준입니다. 단, 상기의 교육훈련을 위한 숙박비,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 3. 교육 · 훈련의 주체

- 1)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불 이수 시 제재                                      | 관련 계약조문 |
|---------------------------------------------------|---------|
| 개업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의 개설이 유예될 수 있음                 | 제11조    |
|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수료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됨 | 제14조    |
|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제9조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1년~2023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필수공급품목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